#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896 발의연월일: 2024. 11. 26.

발 의 자:서영교·한정애·박홍배

이해식 • 박균택 • 임오경

이강일 • 민병덕 • 위성곤

한준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는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대리인을 선임하면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자산관리자, 일반금전대여채권자, 이들에게 고용되거나 위임받아 채권추심을 하는 자들을 제외한 채권추심자들의 경우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이 변호사나 법무법인 또는 법무조합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기가 어렵고, 만약 이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자산관리자, 일반금전대여채권자, 이들에게 고용되거나 위임받아 채권추심을하는 자들은 대리인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여전히 채무자에게 직접접촉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하여도 채권추심자의 연락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최근 불법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싱글맘이 이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여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는 등 살려고 빌린 돈으로 인해 목 숨을 끊는 사례가 계속하여 발생됨.

이에 채무자가 변호사나 법무법인 또는 법무조합 외에도 채무상담, 채무조정 또는 불법채권추심 방지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기업을 채무자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여신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자산관리자 및 일반금전대여채권자 등 모든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채권추심 금지행위의 성립요건에서 "반복적으로"와 "심하게" 요건을 삭제하는 등불법채권추심행위의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제9조제2호·제3호·제6호, 제12조제4호 등).

#### 법률 제 호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을"을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 무조합
-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단체
  - 가. 정관에 채무상담, 채무조정 또는 불법채권추심 방지 활동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1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 이 있을 것
  - 나. 단체의 상시 구성원 수가 1,000명 이상일 것
  - 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을 것

- 3. 채무상담, 채무조정 또는 불법채권추심 방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말한다)으로서 법무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인정을 받은 자
- ② 제1항제3호의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인정요건 및 절차는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제2호 및 제3호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를 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로,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각각 "해치는 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 중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각각 "해치는 행위"로 한다.

제12조제3호의2 중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개인회생절차에 따라"를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러한 절차에 따라"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로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 제8조의2(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 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 에 대한 연락 금지)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채권추심자는 채 심자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무자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 법무법인 · 법무법인 (유한) 또는 법무조합을 채권추 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 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무자 와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또는 채권추심자가 대리인에게 연락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1.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에 ·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따른 여신금융기관 또는 법무조합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

추심회사

-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자산관리자
- 4. 제2조제1호가목에 규정된 자

   를 제외한 일반 금전대여 채

   권자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되거나 같은 자들의 위임을 받아 채권 권추심을 하는 자(다만,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인경우는 제외한다)

<u><신</u> 설>

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 춘 단체

- 가. 정관에 채무상담, 채무조정 또는 불법채권추심 방지 활동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1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었을 것
- <u>나. 단체의 상시 구성원 수가</u> 1,000명 이상일 것
- 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
  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에 등록되어 있을 것
- 3. 채무상담, 채무조정 또는 불법채권추심 방지 사업을 목적으로하는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말한다)으로서 법무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인정을 받은 자
- ② 제1항제3호의 인정에 관한 구체적인 인정요건 및 절차는 법무부장관의 경우에는 법무부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채 7 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 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 1. (생략)
-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 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심하게 해치는 행위
-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

령으로 정하고, 특별시장・광역
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u> 정한다.</u>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u>.</u>
1. (현행과 같음)
2. <u>정당한 사유 없이</u>
해치는 행위
3. <u>정당한 사유 없이</u>
<u>해치는 행</u>

### 치는 행위

- 4. (생략)
-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 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 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 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 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심하게 해치는 행위

#### 7. (생략)

-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 저 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 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 1. ~ 3. (생략)
  - 3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제1항제4 호 또는 제600조제1항제3호에

<u>위</u>
4. (현행과 같음)
5
J.
<u>해치는 행위</u>
6
-11 -11 Al
해치는 행위
7. (현행과 같음)
네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u>.</u>
1. ~ 3. (현행과 같음)
3의2
0° 1 <i>4</i> .

따라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중지 또는 금지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정한 절차 외에서 <u>반복적으로</u>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5. (생략)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4.		
	<u>7}</u>	<u>인회생절차</u>
	가 진행 중이거나	이러한 절
	<u>차에 따라</u>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5.	(현행과 같음)	